

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생활문화  
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 월 11 일

여 수 시 장

2023.08.11



여수시 조례 제1934호

붙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34호

##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.”를 “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이용료”를 “이용료 및 수강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을 “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##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기준

구 분	기 준	금 액
교육·문화 프로그램	10시간 이하	10,000원
	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	15,000원
	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	20,000원
	30시간 초과	30,000원

- ※ 1명당 1개월 기준
- ※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.
- ※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개월별로 기준을 적용함.
- ※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함.

[별표 2]

##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

감 면 기 준	감 면 비 율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4.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 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100%
1.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	50%
	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

※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% 감면비율 적용함.

※ 구비서류: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.

※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.

[별표 3]

##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

### 1. 이용료

반 환 기 준	반 환 금 액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국가,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</li><li>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 가능할 경우</li><li>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</li></ol>	전액 반환
4.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	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반환

## 2. 수강료

반환기준	반환금액						
1. 국가,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.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4.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	전액 반환						
5.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</th> <th>수강 개시일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2이 지나간 후</th> <th>전액 반환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지 아니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</td> <td>수강 개시일 전 수강 개시일 이후</td> <td>전액 반환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강 개시일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2이 지나간 후	전액 반환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지 아니함	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수강 개시일 전 수강 개시일 이후	전액 반환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강 개시일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전 총수강시간의 1/2이 지나간 후	전액 반환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지 아니함					
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수강 개시일 전 수강 개시일 이후	전액 반환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					

- ※ “수강료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.
  - ※ “총수강시간”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.
  - ※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### [별지 제1호서식]

### <앞면>

#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

신청인 정보	신청인(단체)		생년월일(개인)	(□남, □여)
	대표자		연락처/E-mail	
	신청인(단체) 주소			
신청 내용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연/발표회(연습) <input type="checkbox"/> 워크숍/세미나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연/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모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	사용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습실 1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습실 2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습실 3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아리실 1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아리실 2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아리실 3 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습실(세미나실)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목적홀 <input type="checkbox"/> 콘텐츠제작실 1 <input type="checkbox"/> 콘텐츠제작실 2 <input type="checkbox"/> 스튜디오		
	사용기간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00:00부터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00:00까지	
	사용인원	운영진 :      명 / 참가자 :      명 / 총인원 :      명		
	사용료			
세부 내용	반입물	- 장비, 무대시설 등이 있을 시 품목과 수량 기재(별지 사용 가능)		
	사용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사개요 : 참여 대상 및 행사 내용</li> <li>- 행사일정 : 장비 반입, 리허설, 행사 시작/종료 시간과 기타 주요 내용</li> </ul>		
첨부	동아리 소개서 / 사용자 명단 각 1부			

「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## 신청인 단체명 :

대표자 : (인 또는 서명)

## 여수시장 귀하

<뒷면>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### 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
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,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.

### 2.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

- 수집방법 : 정보주체 동의
- 수집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E-mail), 주소, 신청일자, 사용시설, 행사내용

###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여수시 생활문화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.

- 3년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신청일자, 사용시설, 행사내용
- 1년 : 그 외 정보

### 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
(인 또는 서명)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이용료 등) 센터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<u>별도 수강료</u>를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이용료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도 수강료를</u> <u>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
<p>제9조(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)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<u>이용료</u>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) -- ----- <u>이용료 및</u> <u>수강료</u>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이용료 등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<u>이용료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(생 략)</li> <li>3. (생 략)</li> <li>4. (생 략)</li> </ol>	<p>제10조(이용료 등 반환) ----- ----- ---- <u>이용료 및 수강료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